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유아교육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업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 및 「유아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2조의4, 별지 제1호서식)

나. 전학 유아 수업료 일할 정산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심사 예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3호 중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학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편입학”을 “전입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시한”을 “표시하거나 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설립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목적							
	명칭							
	위치							
	개원 예정일							
	정원	구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3・4세	만4・5세	계
학급수								
학생수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위임 신청시)	성명	생년월일			설립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은 사람 (서명 또는 인)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3조,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인)

- 회색 음영으로 표현된 부분(접수번호, 접수일)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 신원진술서(약식)의 서식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의 서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합니다.
 - 4.·5. 및 8. ~ 10.에 해당하는 서식 및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설립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 위임받은 사람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통보
(인가 여부 등)

신청인 접수기관 이송 처리기관(부서)

현행	개정안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부터 제2조제1항, 제2조의2 또는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조의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 -----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설립 및 변경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
제8조(징수방법) ① · ② (생략)	제8조(징수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날짜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학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	

<u>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u> 2. <u>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u> ④ (생 략)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생 략) ② <u>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u>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u>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 ----- ----- -----. 1. ----- <u>전입학</u>-----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u>표시한</u> 경우	3. ----- -- <u>표시하거나 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유아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203-6556